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 style="text-align: center;">보도자료</h1>	작 성 문 의	2016. 4. 27(수)
			국무조정실 규제정책과 과장 김희순 / 사무관 김경태 (Tel. 044-200-2429)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팀장 나윤정 / 사무관 이종선 (Tel. 02-6050-3297)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임을기 / 사무관 강슬기 (Tel. 044-202-2451)
* 엠바고 : 4.27(수) 15:00(회의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 별도배포 # 브리핑 : 4.25(월) 11시,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 7월1일부터 전면 통합운영
- 체외진단 유전자 검사기기 신속출시 확대
- 동일한 제품에 대한 포장지 검사 면제
- 자동차 후사경 카메라로 대체 가능

< 주요 진행 내용 >

- ◆ 중복규제 개선결과 보고, 중복규제 34건 개선 및 이중 규제부담 해소
- ◆ 복지부-식약처 의료기기 분야 협업 우수사례 발표
- ◆ 대구·경북 기업인 규제애로 청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애로 해결

□ 이제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이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를 오가며 의료기기 시장출시 관련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식약처에 신청하면 두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밟게 되며 이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걸리던 시간이 기존의 12개월에서 3-9개월 축소된다.

-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했던 체외진단, 유전자 검사기기도 평가면제 대상을 3배이상 확대(22%→71%)해 의료기기산업을 지원한다. 꼭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평가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감축한다.
- 정부는 또한 제품명·규격 등이 동일한 제품인 경우 단순 디자인 변경, 맛별 구분에 따른 포장지 변경은 동일한 제품으로 보아 포장지 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 모든 자동차에는 실외후사경(백미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실외 후사경을 대체하는 카메라시스템을 장착한 경우에는 실외후사경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개선은 황교안 총리주재로 4월 27일 오후에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확정돼 법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 △제1차('15.7.30, 반월·시화 산업단지), △제2차('15.10.20, 광주 테크노파크)
 - △제3차('15.12.3. 부산 상공회의소) △제4차('16.2.23. 대전 무역회관)
-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굴·규제개선을 건의한 중복규제 50건에 대한 처리결과,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업과제로 진행해 온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되었고,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도 청취·논의하였다.
- 이번 중복규제 개선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체 실태조사 및 주요 경제단체 기존 건의를 토대로 분석·건의한 5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34건이 수용되었다.

- 황교안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약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며,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됨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회의에서 부처간 협업 우수사례로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 5월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품목 중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 기기는 검사방법의 본질적 원리가 다른 경우에만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단축(280일→140일)할 예정이며,
 - 7월부터는 의료기기 허가과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 2.22일부터 시범사업 중으로, 업체가 의료기기 허가과 신의료기술평가를 한 번에 신청하고 동시에 심의를 받은 후 바로 시장에 진입 가능 (시장진입 기간 3~9개월 단축)
- 한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구·경북지역 등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개선 조치들이 기업 비용 절감, 설비 투자로 인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 회의에서 발표·논의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중복규제 개선결과

▶ (개요) 총 50건 중 34건 수용 (수용률 68%)

총계	소계	기조치	수용	부분수용	대안마련	불수용
50	34	7	10	10	7	16

▶ (특징) 동일한 목적을 위해 동일한 대상을 규제하는 엄밀한 의미의 중복 규제*는 일부였으며, 모두 개선 조치

* 예 :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시, 환경정보 공시, 포장검사 등

- 목적이 상이한 여러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 (기대효과) 약 2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 (향후계획) 수용하기로 한 모든 과제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실시간 점검·관리

- 법률개정 사안은 20대 국회 제출 및 입법활동 지원, 정부내 조치사항은 신속 추진

금융·경영 분야

①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투자설명서를 간소화합니다.

- 증권발행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완화 (금융위) -

• (현행) 주식투자자 대상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우편 배송만 가능하고, 투자설명서 내용이 증권신고서와 유사하고 방대해 제작·교부비용 부담 및 자금조달 애로 발생

• (개선) 전자교부 요건 간소화 추진

* 투자설명서 개선 TF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자본시장법령 개정('16.9월)

⇒ (기대효과) 투자설명서 제작비용 및 교부비용 약 100억원 절감 기대

② 비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어집니다.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소유현황 간소화 (금융위) -

-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 집행을 위해 도입된 비계열사 주식보유현황신고가 출총제 폐지('09년)에도 여전히 존치
- (개선) 비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신고 폐지
 - * 올해부터 현황신고요청 미실시('16.4월)

⇒ (기대효과) 61개 대기업집단 소속 1,696개 회사의 신고부담 완화

③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가 개선됩니다.

- 자본시장법에 따른 변동신고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상의 변동신고 면제 (금융위) -

-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식변동신고 이행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상의 주식 변동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신고를 동법 보고시한(5일) 보다 단기(2일)에 신고를 한 경우만 같음 가능
- (개선) 자본시장법 보고시한(5일) 내 신고시 상장규정 신고 생략 가능
 -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16.6월)

⇒ (기대효과) 공시자료 정리 및 등록비용 약 1.4억원 절감 기대

건설·물류 분야

① 하도급 위반에 대한 자진시정을 통해 자금흐름이 원활해집니다.

- 하도급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방식 개선 (공정위) -

- (현행)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자진시정시에도 제재 부과
- (개선) 공정위 조사개시 전 위반행위 자진시정시 제재대상에서 배제, 대금 미지급의 경우 조사개시 후 30일내 자진시정시 벌점 및 과징금 면제
 - * 하도급법 시행령('16.1월)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15.10월) 개정 완료

⇒ (기대효과) 연간 1,600억원의 미지급대금 조속 지급 기대

② 석고보드 인정시험 부담이 경감됩니다.

- 석고보드 내화구조인증 유효기간 및 시험횟수 개선 (국토부) -

- (현행) 석고보드 내화구조인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시 연장시험 2회 실시
 - (개선) 내화구조인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연장시험(3년차) 1회만 실시
 -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16.5월)
- ⇒ (기대효과) 연간 약 4천만원의 인정시험 검사비용 절감 기대

③ 통관취급법인의 수탁 취급범위가 확대됩니다.

- 통관취급법인에 대한 직접운송의무 완화 (기재부) -

- (현행) 통관취급법인은 직영차량으로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 가능
 - (개선) 직접운송 기준 완화(직영차량 외 임차차량도 활용 가능), 직접운송의무 예외사유 확대(노사분규,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 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6.6월)
- ⇒ (기대효과) 통관취급법인 취급물량 확대 및 운송장비 운영 효율 증대

환경 분야

① 동일한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포장지 검사가 면제됩니다.

- 포장 검사 간소화 (환경부) -

- (현행) 기존제품과 규격·중량·포장공간 등이 동일하더라도 단순 디자인 변경, 맛이 다른 경우 포장지 재검사 실시
 - (개선) 제품명, 규격 등이 동일한 경우 단순 디자인 변경, 맛별 구분 등은 동일 제품으로 보아 포장검사 면제
 -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16.6월)
- ⇒ (기대효과) 연간 약 24억원의 포장검사비용 절감 기대

②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시 방법에 대한 혼란을 없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시제도 개선 (환경부) -

- (현행) 산안법·화관법·위험물법상 화학물질 경고표시 서로 상이, 각 법이 타 법에 의한 표시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시 수정·보완 지시 등 부담 발생
 - (개선) 업무지침 수립 및 교육으로 경고표시 상호인정 준수, 경고표시 일원화 추진
 - * 유해화학물질 표시 안내서(업무매뉴얼) 마련·배포 완료('16.1월)
- ⇒ (기대효과) 화학물질 경고표시에 대한 점검부담 완화

③ 환경정보는 한 번만 제출·보고하면 됩니다.

- 환경정보 공시제도 개선 (환경부) -

- (현행) 주요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는 한편, 개별 환경법에 따라 소관 부서(개별 시스템)에 별도로 보고
 - (개선) 개별법에 따라 보고하는 정보는 공개시스템 등록 제외
 - *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개정('16.12월)
- ⇒ (기대효과) 연간 약 2억원의 정보 중복입력비용 절감

④ 국가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지자체 평가는 면제됩니다.

- 국가-지자체간 환경영향평가 개선 (환경부) -

- (현행) 국가 시행 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후 해당 부지의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가 중복 실시되는 경우 존재
 - (개선) 국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지자체 평가 제외
 - *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지침 통보('16.4월)
- ⇒ (기대효과) 사업자의 중복 환경영향평가 부담 경감

인증 분야

① 목재제품 인증을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합니다.

- 목재제품 품질규격표시제도 개선 (산림청) -

- (현행) 수입 목재제품의 경우 해외인증을 인정하지 않아 수입시 국내인증(품질규격심사) 중복 취득 필요
 - (개선) 국내인증(품질규격심사)을 폐지하고 자기적합성 선언(자율규제) 도입, 해외 검사기관에 대한 자격부여 및 검사성적서 인정을 통해 중복검사 방지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6.12월), 목재 검사기관 지정기준 개정(완료)
- ⇒ (기대효과) 연간 시험비용 1.2억원 절감 기대

② 국·내외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제도(GMP)의 상호인정을 추진합니다.

-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제도(GMP) 개선 (식약처) -

- (현행) 의료기기의 내수와 수출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는 국내 제조·판매를 위한 인증(GMP)과 수출국 인증을 각각 취득 필요
 - (개선)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 가입국간 GMP를 인정하는 단일 심사프로그램(MDSAP) 참여('16.8월) 및 FTA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 추진('17~)
- ⇒ (기대효과) 연간 11.7억원의 인증비용 절감 기대

<계 속>

2. 지역현장 규제애로 개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 ▶ (개요)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 7건 청취 및 개선
- ▶ (내용) 폐기인체지방 재활용 허용, 실외 후사경 장착기준 완화, 동일 건축물내 냉동설비 합산 허가 신청 허용 등

□ 주요 건의내용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실외후사경 기능을 대체한 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도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 실외후사경 대체 카메라 시스템 장착시 실외후사경 장착의무 제외(국토부)

- (현행) 모든 자동차는 실외후사경 없이 도로운행 불가
- (개선) 실외후사경 대체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 실외후사경 없이 도로운행이 가능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6.12월)

구 분	현 행	개 선
실외후사경 장착 관련 규제 개선	실외후사경을 없애거나 카메라 및 모니터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임	실외후사경 기능을 대체한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 실외후사경 없이 도로운행 가능

⇒ (기대 효과) 카메라, 모니터 등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기대 및 연비 개선 (약 2%)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 사각지대 축소에 의한 운전자 편의성 증대

②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지방의 재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태반과 같이 폐인체지방 재활용을 허용(환경부, 식약처)

- (현행) 폐인체지방을 이용한 연구만 가능
- (개선) 폐인체지방을 재활용하여 인공피부, 콜라겐 필러 등 개발 허용
*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적합성 및 안정성 확인('16년, 식약처)
*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17.12월)

구 분	현 행	개 선
폐인체지방 재활용 허용	의료폐기물 중 태반만 재활용 가능	의료폐기물인 폐인체지방도 재활용 허용

⇒ (개선 효과) 연간 버려지는 폐인체지방 100톤(100,000kg)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원(1kg당 2억*)어치 생산

- * 인체지방 1kg으로 세포외기질 3,000mg(1억7천만원) + 콜라겐 120mg(2,744만원) 생산

③ 동일 건축물의 냉동설비들에 대한 허가신청이 한번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동일건축물의 고압가스 냉동설비능력 합산 사용허가 (산업부)

- (현행) 병원, 학교 등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개의 냉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개의 냉동설비마다 허가신청을 별도로 받아야 해서 동일한 내용의 기술검토서와 허가신청서를 수차례 반복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
- (개선)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된 냉동설비의 냉동능력을 합산하는 방안으로 법령 개정 (단, 건물주, 설비제조·설치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따른 적용범위 조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6월) (별표3, 냉동능력 산정기준)

현행	개선
냉동능력 산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1.(생략) 2-가. 냉매가스가 배관에 의하여 공통으로 되어 있는 냉동설비	1.(현행과 같음) 2-가.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냉동설비

⇒ (개선효과)* 다수의 냉동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검사비용 및 면허수수료 감소, 허가신청 관련 행정 부담 완화

④ 여성 건설기술자의 근로환경 및 고용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으로 인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시에도 등록기준 인정 (국토부)

- (현행)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백발생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보아 등록말소
-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3인 이상 업종의 1인에 한해 육아휴직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6.11월)

구분	현행	개선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규제 개선	육아휴직으로 공백 발생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처리	육아휴직으로 공백 발생시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인정

⇒ (개선효과) 건설기업 기술자가 육아휴직을 내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출산장려 등 긍정적 효과 기대

⑤ 해상 시운전 중에 임시항해기간이 만료되면 편리하게 기간연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해상시운전중 기간 만료 시 서류에 의한 기간연장 허용(해수부)

- (현행) 신조선이 해상에서 시운전중 임시항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연장을 위한 검사를 위해 입항하거나 항만청 검사관 승선 등이 필요
- (개선) 항해계획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기 교부된 임시항해증서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해양수산부예규 제2013-24호)」 개정 : '16. 8

구 분	현 행	개 선
임시항해 허가기간 연장 방안 개선	임시항해 허가기간 만료 시 선박의 입항 또는 검사관 승선하여 임시항해검사 다시 필요	시운전 중 항해계획 등 변경이 없을 시 서류제출로, 기 교부된 임시항해증서 유효기간 연장 가능

⇒ (개선효과) 해상 시운전 중 임시항해 기간연장을 위한 입항 및 검사관 승선 등 임시항해검사('15년 임시항해검사선박 392척)에 따른 조선사의 행정 부담 완화

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의 경우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에 포함 (공정위)

- (현행)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 가능하나, 그 범위는 발주자·원·수급사업자간에 직불을 '합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개선) 하도급지킴이 등과 같은 '대금직불시스템을 통한 직불'의 경우도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에 추가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16년 하반기)

구 분	현 행	개 선
원사업자 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	3.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 등과 같은 '대금직불 시스템을 활용한 직불'의 경우도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에 추가

⇒ (개선효과) 원사업자의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⑦ 건축물 건축 시 건축심의 개최 시기의 탄력 운영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건축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전 건축심의 의무화 규정 개선(국토부)

- (현행)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 (개선)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 또는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건축법」 개정('16.12월)

구 분	현 행	개 선
사전 건축심의 의무화 규정 개선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전 또는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

⇒ (개선효과) 건축 허가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매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백억원 이상의 매물비용 감소효과 기대

※ (참고) 1. 환경연 건의 중복규제 및 처리결과 (분야순)

2. 중복규제개선 상세내용 및 후속조치 등 (처리결과 순)

3.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주요 내용

4. 대구·경북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주요 과제 스토리텔링

참고1

한경연 건의 중복규제 및 처리결과 (분야순)

분야	건의 과제	소관부처	결과	후속조치
국토/ 수도권 (6)	1. 산업단지 조성 시 경관심의를 인허가 특례법상 통합 적용	국토부	부분수용	-
	2. 산업단지 준공검사 완료 시 산지 복구 준공검사 면제	국토부, 산림청	불수용	-
	12. 제2종 지구단위계획 범위 단위 사업장 내에서의 증축·신축 허용	국토부	불수용	-
	13. 농지, 임야에 설치하는 통신전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농림부, 산림청	불수용	-
	16. 토석채취허가의 이중 규제	산림청	불수용	-
	18. 허가기관이 다른 연접부지의 건축 인허가 단일화	국토부	기초치	-
건설/ 건축 (9)	2.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 제재 개선	국토부, 고용부, 조달청	불수용	-
	3. 건설하도급 위반시 이중처벌 금지원칙의 준수	공정위	부분수용	-
	7.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 통보기준 일원화	국토부	대안마련	시행령
	9. 해외공사에 하도급법 적용 예외	공정위	불수용	-
	15. 해외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 의무 완화	국토부	부분수용	행정규칙
	16. 건축조례 관련 : 공작물 등에의 준용	국토부	수용	기타(조례)
	17. 배합관련 및 통제기능 개선	국토부, 산업부	부분수용	행정규칙
	20. 석고보드 스테드 벽체 내화구조 중복 내화시험 폐지	국토부	대안마련	행정규칙
	21.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레미콘 원재료 중복시험 개선	국토부	기초치	-

분야	건의과제	소관부처	결과	후속조치
산업안전 (7)	5. 중복적인 산업재해 보고의무 간소화	고용부	불수용	-
	6.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고용부	불수용	-
	7. 가스시설 중복 법정검사 간소화	산업부	수용	시행규칙
	8. 대용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PSM) 대상공정에서 제외	고용부	불수용	-
	9. 기업부설연구소는 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고용부, 미래부	대안마련	정책추진
	10. 발전시설의 시운전 검사 및 사용전 검사제도 개선	산업부, 고용부	부분수용	행정규칙
	12. 정기점검 사업용화물차의 정기검사 면제	국토부	기초치	-
환경 (7)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통합관리체계 구축 (에너지 사용량 신고 일원화)	산업부	부분수용	-
	5. 온실가스 목표관리지표의 중복해소	환경부, 산업부	불수용	-
	6. 에너지 관리관련 불합리 중복의무 이행 사항의 단일화	산업부	부분수용	시행규칙
	9.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시 제도 개선	고용부, 환경부, 안전처	기초치	-
	22. 환경정보공시제도 개선	환경부	수용	행정규칙
	23. 포장관련 검사의 간소화	환경부	수용	행정규칙
	26.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구내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 중복시행 제외	환경부	수용	기타(지침)

분야	건의과제	소관부처	결과	후속조치
경영 구조/ 지배 구조/ 공정 거래 (6)	3.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중복 공시 제도 일원화	공정위, 금융위	부분수용	시행령
	4.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신고자료 간소화	공정위, 금융위	수용	-
	5.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의무 삭제	금융위	수용	행정규칙
	6. 재무제표 공시관련 보고서 작성기준 일원화	금융위	불수용	-
	12. 투자설명서 사전교부의무 완화	금융위	수용	법률
	14.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제도 개선	복지부	대안마련	-
금융/ 자금 조달 (3)	5. 투자자예탁금의 별도 예치제도 폐지 또는 증권회사 예금보험료 징수	금융위	불수용	-
	7.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 완화	금융위	불수용	-
	8.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및 업무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금융위	수용	법률
기술 인증/ 시험 (6)	1.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 인증제도 개선	식약처	부분수용	정책추진
	6. 수출용 차량 부품 수입 시 인증 면제 확인서 제출 폐지	미래부	기초치	-
	7.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수입/장착하는 타이어의 효율등급 신고 등 완화	산업부	대안마련	행정규칙
	10. 정보보호인증의 법적 의무화 완화	미래부	부분수용	-
	12. 전파인증 표시절차 개선	미래부	기초치	-
	13. 목재제품의 품질규격표시제 관련규제 완화	산림청	수용	법률

분야	건의과제	소관부처	결과	후속조치
물류/ 유통 (4)	1. 복합물류터미널 개발제한구역내 제조·판매 허용	국토부	불수용	-
	3. 통관법인 물류기업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기재부	대안마련	시행령
	5. 대규모점포의 출점관련 유통법(§8)과 상생법(§32)의 중복규제 해소	산업부	불수용	-
	6. TV홈쇼핑 업체의 전자상거래 관련 3중 규제 해소	공정위, 방통위, 식약처	불수용	-
산업 (1)	4. 앱마켓 관련규제 완화	공정위, 방통위, 문체부	기조치	-
기타 (1)	1. 건설업종 동반성장 관련 평가 일원화	국토부, 공정위	대안마련	행정규칙

참고2

중복규제개선 상세내용 및 후속조치 [처리결과 순]

<기초치 : 7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비고
국토-18	인허가 기관이 다른 연접부지의 건축 인허가 단일화	① 규모가 다른 2개의 건축물을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 건축규모에 따라 인허가 기관이 달라 각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통합하여 건축허가를 한 번만 받도록 개선	국토부	[기초치] ① 건축허가 단계에서 사용승인 신청시 연접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한 번의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현행 건축법 하에서 가능	
건설-21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레미콘 원재료 중복시험 개선	① 건설업체가 레미콘 납품업체 에게 원재료시험 비용을 전가	국토부	[기초치] ① 비용 전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4.5월) 주요기관 협조요청 및 현장점검 추진	
산안-12	사업용 화물차의 정기검사 면제	① '05년 규제장관회의시 정기검사· 정기점검·정밀검사를 통합토록 하였으나 정기점검은 유지, 정기점검시 정기검사 면제 필요	국토부	[기초치] ① 정기점검제도 폐지('13.12월)	
환경-9	유해화학물질 경고 표시제도 개선	① 산안법, 위험물법, 화관법상 화학물질 표시방법(그림문자)이 상이하여 점검시 혼선이 있으며 수정보완 등 부담 발생	환경부 고용부	[기초치] ① 현행 각 법령은 타 법에 의한 경고표시도 인 정하고 있으나, 규제현장에서 상호인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인식도 부족한 상황 - 업무지침 수립 및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표시 일원화 추진 * 유해화학물질표시 안내서 마련 배포('16.1)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조치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비고
검사-6	수출용 차량부품 수입시 인증면제확인서 제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완성차가 전과인증을 받으므로 부품(네비게이션)에 대한 전과인증은 중복규제 ② 자기인증을 한 경우 면제되나 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해 면제효과 없음 	미래부	<p>[기초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품이든 완성차든 1회만 인증반도록 기초치 ② 면제확인서 제출은 비인증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로 유지 필요하며, 온라인시스템 구축으로 불편 대부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신청서 작성-면제확인서 발급-통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총 5시간 내외·무비용) - 동일·반복품목은 인증번호만 입력 후 즉시 확인 	
검사-12	전과인증 표시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과인증정보를 제품과 포장에 모두 부착해야 해 수입품은 포장을 뜯은 후 재포장해야 함 ② 여러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일원화 	미래부	<p>[기초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제품은 제조단계에서 인증표시를 하므로 재포장의 부담이 없고, 미인증제품의 경우 인증후 판매해야하므로 재포장 불가피 ② 인증 통합처리 실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 시험·인증 통합처리지침('12.7) 	
산업-4	앱마켓 관련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정위(약관법)와 협의하여 약관을 수정하였으나 문체부(콘텐츠법)에 의해 추가 수정하는 등 관리부처 중복, 관리 일원화 필요 ② 국내-해외기업간 역차별 해소 	공정위 방통위 문화부	<p>[기초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건의 당시와 달리 약관 관련 조치가 정착되어 일원화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건의자에게 확인 또한 전자상거래법과 타법이 경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토록 하여 중복의 우려가 없으나 콘텐츠법과 전자상거래법 간 중복규정을 삭제하는 콘텐츠법 개정 추진중 ② 해외 앱마켓 사업자의 약관법 및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14.5월, 7월)하는 등 시정조치를 동등하게 적용, 역차별 해소 	

<수용 : 10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경제적 효과
				후속조치 및 조치시한	
건설-16	건축조례 :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일정 규모 이상 시설만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과 달리 조례는 규모기준이 없어 소규모 공작물도 신고해야 하는 부담 존재, 조례 개정 필요	국토부 (인천시)	[수용] ①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 조례에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인천시 긍정 검토) ▪ 지자체 협조요청('16.2) 및 조례 개정 추진	2.4억 비용 절감 및 1주일의 신고준비기간 경감 기대
산안-7	가스시설 중복 법정 검사 간소화	① 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성평가의 시기가 중복될 경우 안전성 평가 면제 ② 상이한 점검이라 면제가 어려울 경우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점검시기 조정	산업부	[수용] ① 양 점검은 확인 내용 및 검사방법이 상이하여 면제 곤란 ② 업체 사정에 따라 점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개정('16.12)	검사비, 인건비 등 비용 분산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환경-22	환경정보 공시제도 개선	①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 중 일부는 타 법에 의해 기보고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제출항목에서 면제 필요	환경부	[수용] ① 타 법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정보는 면제하고 제출하지 않는 정보만 등록하도록 시스템 개편 ▪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개정('16.12)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개선('17.3)	연간 2억원 중복입력비용 절감 기대
환경-23	포장 관련 검사 간소화	① 규격, 중량 등이 동일함에도 디자인 변경 및 맛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로 포장검사를 받는 것은 중복 규제, 개선 필요	환경부	[수용] ① 제품명, 규격, 중량, 포장공간 등이 동일한 경우 단순 디자인 변경 및 맛 종류별 구분은 동일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포장검사 불요) ▪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개정('16.6)	검사비용 24억원 절감 기대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경제적 효과
				후속조치 및 조치시한	
환경-26	환경영향평가 중복시행 제외	① 국가지행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지자체가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실시하는 것은 중복 실시를 금하고 있는 환경부 지침 위반으로 서울시 조례 및 지침 개정 필요	환경부	<p>[수용]</p> <p>① 국가 시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지구내의 부지 뿐 아니라 부지내의 건축물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므로 동일 사업에 대한 중복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 하는 것이 타당</p> <p>▪ 지자체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지침 통보('16.4)</p>	-
경영-4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주식소유현황 신고 자료 간소화	① 비계열회사에 대한 주식보유현황 신고는 출자총액제도 집행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출총제가 폐지된 만큼 신고 의무도 폐지 필요	공정위	<p>[수용]</p> <p>① 출총제 폐지에 따라 비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신고 폐지</p> <p>▪ 올해부터 주식소유현황신고시 비계열사 현황 제외(4월 신고 요청시 동내용 안내)</p>	61개 집단내 1,696개사 신고의무 경감
경영-5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 의무 삭제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변동신고(주식보유자)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주식변동신고(상장법인)가 중복, 상장규정상의 신고의무 폐지 필요	금융위	<p>[수용]</p> <p>①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가 이행된 경우 상장규정상의 신고의무 생략 가능('14.10월) 다만, 자본시장법의 보고시한인 5일보다 단기간인 2일이내 보고시에만 상장규정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점은 불합리하여, 5일이내 보고시 상장규정에 따른 보고의무가 생략되도록 개선 예정</p> <p>▪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16.6)</p>	신고비용 1.4억원 절감 기대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경제적 효과
				후속조치 및 조치시한	
경영-12	투자설명서 사전교부의무 완화	① 증권 모집·매출시 실물 투자 설명서를 사전 교부하는 사례가 있어 발행인의 재정부담 발생 전자적 교부 + 원하는 자에 한해 실물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금융위	<p>[수용]</p> <p>① 현행법상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가 가능하나 실물을 발송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 전자 교부 활성화(5P 분량의 핵심투자설명서 등) 방안 마련 추진(투자설명서 제도개선TF 구성·운영 중)</p> <p>▪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개정('16.9)</p>	연간 100억원의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용 절감 기대
금융-8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등 중복규제 개선	① 각종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 보호책임자를 각각 지정하게 하여 인력관리에 비효율 증가	금융위	<p>[수용]</p> <p>① 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의무가 면제되며 정보관리기준도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되도록 개정 추진 중</p> <p>▪ 신용정보법 개정('16.8, 국회제출)</p>	17.9억원 비용절감 기대
검사-13	목재제품의 품질규격 표시제 관련 규제 완화	① 수입 목재제품의 경우 해외 인증을 인정하지 않아 국내 인증(품질규격검사)을 중복해서 받아야 함	산림청	<p>[수용]</p> <p>① 지정받은 해외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을 국내 인증결과로 같음('15.8월), 중복 해결 향후 인증제를 폐지하고 자기적합성 선언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예정</p> <p>▪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6.12)</p>	연간 검사비용 1.2억원 절감 기대

<부분수용 : 10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경제적 효과
				후속조치 및 조치시한	
국토-1	산업단지 조성 시 경관심의를 인허가 특례법상 통합 적용	① 산단심의에 경관심의 통합 ② 경관법 제정 이전 수립된 산단의 경우 계획변경을 하더라도 경관심의 제외	국토부	[부분수용] ① (기초치) 산단심의에 경관심의를 통합 ② (불수용) 계획 변경으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심의 필요 ▪ 산단간소화법 개정완료('15.8)	산단계획 승인 기간 단축
건설-3	건설하도급 위반시 이중처벌 금지원칙 준수	① 하도급법 위반시 벌금, 과징금, 입찰제한 등 다수 제재가 중복, 이중처벌 금지 준수 ② 위반사항 자진신고시 제재조치 완화	공정위	[부분수용] ① (불수용) 벌금, 과징금, 입찰제한은 그 목적이 상이하야 이중처벌이 아님 ② (수용) 자진신고 및 피해보상시 제재대상 배제 하도록 지침 개정, 대금 미지급의 경우 30일 내 자진시정시 벌금 및 과징금 면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완료('15.1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완료('16.1)	연간 1,600억원의 미지급대금 지급 촉진 및 자금순환 기대
건설-15	해외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 의무 완화	해외공사시 수주활동 등 7종 보고의무 존재 ① 중복 유사 보고 통합 ② 상황보고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과태료 폐지 ③ 수의계약의 경우 수주활동 보고 면제 ④ 신고기간 개선(15일→30일) ⑤ 계약내용 변경이 빈번한 경우 최종 확정 이후 1회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국토부	[부분수용] ① (불수용) 정책수립,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필수 정보이며 보고별 성격이 상이해 통합 곤란 ② (불수용) 과태료 폐지는 곤란하나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바 있음 ③ (기초치) 수의계약은 보고 생략 가능 ④ (불수용) 신고기간 확대시 신속한 변경사항 대응이 불가능해져 수용 곤란 ⑤ (기초치) 매반기 15일 전까지 1회만 변경 보고 ▪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행정지침 시달 완료('16.3.7)	1.2천만원의 신고비용 절감 기대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경제적 효과
				후속조치 및 조치시한	
건설-17	배합관련 및 통제기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콘크리트 배합기준을 세부배합규격 준수 위주에서 성능 중심으로 전환 ② 산업부의 품질검사와 국토부의 현장반입시 검사 등이 중복, 관리주체 일원화 필요 	국토부 산업부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용)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전환 여부 결정 ② (대안마련) 산업부는 생산과정 및 제품을 인증하며,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반입되는 제품의 사용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각 제도의 목적과 성격이 상이해 일원화 곤란 <p>다만, 양 부처 지침 중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통합토록 검토 추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진흥원 사전기획과제로 연구실시중 	
산안-10	발전시설의 시운전 검사 및 사용전 검사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안법 및 규제완화특별법에 따라 전기사업법의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됨에도 PSM의 시운전검사 지속 실시 	고용부 산업부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안법 등에 의해 전기사업법 검사를 받은 설비는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PSM 및 시운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p>다만, PSM 시운전검사 항목 중 전기사업법의 점검항목은 면제 추진</p>	연간 108만원 검사준비비용 절감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지침 개정('16.4) 	
환경-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통합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온실가스 관련 자료 DB화 및 관련부서 공유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 ② 온실가스 명세서와 에너지 사용량 신고 중복, 에너지 사용량 신고 폐지 필요 	산업부 환경부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조치) 자료제출 창구 단일화 및 DB화 구축 완료, 운영과정상 자료 중복요구 등 지속 개선 ② (불수용) 온실가스 명세서와 에너지 신고는 작성 대상 및 시기가 상이하고 에너지 신고 작성 분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존치 	-
환경-6	에너지 관리 관련 불합리한 중복의무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연간 2천 TOE이상 사용하는 사업자는 에너지진단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상당히 유사, 목표관리제 이행기업은 에너지진단 면제 필요 	산업부	<p>[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 중 실적우수 업체에 한해 에너지 진단 면제 	37.6억원의 진단비용 절감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개정('16.5)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경제적 효과
				후속조치 및 조치시한	
경영-3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중복 공시제도 일원화	<p>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이 유사한 내용의 공시의무를 부과해 업무 부담 및 오류 발생</p> <p>① 사업보고서 중심으로의 공시 체계개편 및 단순오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선</p> <p>② 주요사항보고서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일원화</p> <p>③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일원화</p>	공정위 금융위	<p>[부분 수용]</p> <p>① 양 법상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p> <p>② 현행법상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중 주요사항보고서와 중복되는 경우 같음 가능</p> <p>③ 임원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간 중복 항목에 대한 개선 추진중</p> <p>▪ 공시제도 개선 연구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16.12)</p>	
검사-1	의료기기 제조품질 관리(GMP) 인증제도 개선	<p>① 의료기기 국제인증인 ISO13485를 받은 경우 국내인증인 GMP 면제 등 간소화</p> <p>② 각 국가, 기관 등과의 협약을 통한 상호인증제 도입</p>	식약처	<p>[부분 수용]</p> <p>① 타 국가에서 인정받은 GMP를 국내 GMP로 인정하는 것은 상호인증을 통해 추진 가능</p> <p>- 상호인증과 관련하여 국제의료기기 당국자포럼 국가간 단일인정프로그램(MDSAP) 참여 및 FTA국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추진</p> <p>▪ MDSAP 및 MRA 추진</p>	연간 11.7억원 GMP 심사비용 절감 기대
검사-10	정보보호인증의 법적 의무화 완화	<p>국내 정보보호인증(ISMS)과 국제인증(ISO27001) 중복</p> <p>①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인증 심사시 동일한 항목 면제</p> <p>② 국내인증을 선택인증으로 변경하여 기업이 국내·국제인증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p> <p>③ 국내인증 대상자 축소</p>	미래부	<p>[부분 수용]</p> <p>① (기초치) ISO27001을 취득한 경우 ISMS와 중복되는 부분의 심사 생략 가능</p> <p>② (불수용) ISO27001의 심사범위, 깊이,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ISMS와 동등한 인정 곤란</p> <p>③ (불수용) 현행 의무 인증대상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어 더 이상 축소는 곤란</p> <p>▪ 정보통신망법 개정 완료('15.12)</p>	연간 7.2천만원 인증비용 절감 기대

<대안마련 : 7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경제적 효과
				후속조치 및 조치시한	
건설-7	원도급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기준 일원화	① 건설하도급계약시 그 결과를 발주자 및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서 발주자를 위한 공사대장도 작성(온라인 입력) 하는 것은 중복이며, 건설공사 대장을 발주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갈등 발생	국토부	[대안 마련] ① 1억이상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결과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입력으로 일원화하고, 대장입력시 SMS발송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건설법 시행령 개정('16.11)	연간 1.8억원 통보비용 절감 기대
건설-20	석고보드 스티드 벽체 내화구조 중복시험 폐지	① 내화구조인증을 취득한 방화 석고보드에 단순 배합비만 달리 하여 추가기능(방화방수) 석고 보드를 제작한 경우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	국토부	[대안 마련] ① 배합비가 달라지고 추가기능이 들어간 제품을 동일 제품으로 보기 곤란 다만,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예 : 3년→5년)하여 업계의 부담 경감 추진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개정('16.5)	연간 38백만원 검사비용 절감 기대
산안-9	기업부설연구소는 연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① 기업연구소는 이미 산안법을 적용받고 있고 연안법 규정이 산안법과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연안법 적용 면제	고용부 미래부	[대안 마련] ① 중복되는 연구소 지도점검·검사와 관련하여 공동점검, 타부처 점검결과 인정 등 통합방안 마련 * 산안법과 연안법이 중복되는 경우 연안법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미래부-고용부간 공동점검 협의 및 방안 마련('16.7)	연간 3천만원 점검비용 절감 기대
경영-14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 제도 개선	하도급법(60일)과 달리 의료법은 의약품 대금지급 기한이 없이 3개월내 결제시 할인규정만 존재 ① 결제제도를 하도급법으로 일원화 ② 납품대금 할인제도 폐지	복지부	[대안 마련] ① 의약품 납품은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없던 대금지급기한(6개월) 및 지연이자 지급제도(20%내) 신설 ② 할인제도는 조기결제 유도, 리베이트 최소화 등을 위해 필요 ▪ 약사법 개정완료('15.12), 시행 예정('17.12)	연간 197억원 지급수수료 절감 예상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경제적 효과
				후속조치 및 조치시한	
검사-7	자동차 제작자의 타이어 효율등급 신고 완화	① 타이어를 유통하지 않는 완성차 제작자에게도 제조·수입업체가 수행하는 타이어 에너지효율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되어 부담	산업부	<p>[대안 마련]</p> <p>① 자동차 제작자가 직접 수입하여 장착하는 타이어 및 유지보수를 위한 판매분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관리는 필요 다만, 현재 동일한 내용을 ‘타이어 수입업자’ 로서와 ‘자동차제작자’로서 중복 보고하는 상황 개선 추진(서식통합 후 한 번만 보고)</p> <p>▪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 표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16.5)</p>	연간 5.5백만원의 보고비용 절감 기대
물류-3	통관법인 물류기업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화물운수사업법과 달리 통관법인의 경우 직접운송비율 규정이 없어 통관을 위탁받은 물품 전량을 직접 운송해야하는 상황 ① 화물운수사업법과 같이 직접 운송 기준 마련 ② 직접운송 예외 사유 마련	기재부 국토부	<p>[대안 마련]</p> <p>① 직접운송에 해당하는 차량 기준을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차량으로 완화(직영차량의 임차차량 활용 가능)하고 직접운송의 예외사유 (노사분규,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확대</p> <p>▪ 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6.6)</p>	통관취급법인 취급물량 확대 및 운송장비 운영 효율 증대
기타	건설업종 동반성장 관련 평가 일원화	① 공정위의 동반성장협약평가와 국토부의 건설업자 상호협력 평가 중복, 상호협력평가를 폐지하고 동반성장협력평가로 일원화 필요	공정위 국토부	<p>[대안 마련]</p> <p>① 양 평가는 평가기준, 평가대상 등이 상이하 일원화 곤란 다만, 평가실적 제출일이 2월로 동일하여 업무 부담이 발생하므로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시기를 3월로 조정</p> <p>▪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16.12)</p>	평가준비 부담 경감

<불수용 : 16건>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비고
국토-2	산업단지 준공검사 완료 시 산지 복구 준공검사 면제	① 산지에 산단조성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산지를 산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인데, 산단 준공검사와 별도로 산지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부담	산림청	[불수용] ① 산지복구준공검사는 산단 개발에 따라 발생한 산지 비탈면 등의 붕괴위험 등을 예방하는 필수 절차로 면제 불가(개발에 따라 산지가 모두 없어진 경우는 복구의무 없음)	
국토-12	제2종 지구단위계획 범위 단위 사업장내에서의 증축·신축 허용	① 제2종 지구단위계획 확정 후 그 지구내에서 건축물을 증·신축하는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중복 ② 지구계획단위 확정 후 계획과 상이한 건축물의 건축 허용	국토부	[불수용] ①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지구내 일정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개별 건축물은 안전,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검토 필요 ② 현행법상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의 제안으로 계획변경 가능	
국토-13	농지, 임야에 설치하는 통신전주 인허가 절차 간소화	① 통신전주는 필요면적이 1m ² 에 불과하나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해 과도한 시간·비용 소요, 전용허가 대상에서 통신전주 제외 필요	농림부 산림청	[불수용] ① 주변 농지·산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용심사를 거쳐 적정한 위치에 설치 필요 다만 농지전용허가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침을 시달 예정이며, 산지의 경우 현재도 30m ² 이하 송수신설비는 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 가능(전용허가 불필요)	
국토-16	토석채취허가의 이중 규제	① 광물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가 필요, 허가없이 반출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산림청	[불수용] ① 석회석 채굴인가는 광물채굴에 대한 인가로 폐석(토석) 반출을 인가한 것이 아니며, 광물채굴은 토석채굴에 비해 약 10배 이상 큰 면적으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건의수용시 광물채굴인가를 이용한 무분별한 토석채굴 우려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비고
건설-2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중복 제재 개선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시 형사처벌과 입찰참가제한 병과 ① 경미한 위반행위는 행정조치로만 규제하고 경제별로 일원화 ② 건설법과 하도급법간 상이한 처벌 개선	국토부 고용부	[불수용] ① 경제별만 부과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더 큰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고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 등을 경미한 위반으로 보기 곤란 ② 건설법과 하도급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하도급법 우선 적용하므로 중복여지 없음	
건설-9	해외공사 하도급법 적용 제외	① 해외공사시 국내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법과 현지법 모두 적용되어 중복, 하도급법 면제 필요	공정위	[불수용] ① 하도급법은 지위 격차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장소가 해외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할 경우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곤란	
산안-5	중복적인 산업재해 보고의무 간소화	① 산재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급여신청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와 같이 요양급여신청서로 환원 필요	고용부	[불수용] ① 산재는 원인 및 현황 파악 목적이며 사업주의 의무인 반면, 요양급여신청서는 근로자의 권리로 양자 통합시 근로자 권익 침해 우려	
산안-6	산업재해 보고의무 완화를 통한 사업주 부담 경감	① 근로자와 합의 및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산재 보고의무 면제 ② 벌금과 별도로, 3년간 산재보험급여율이 85%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50% 인상하는 것은 중복 제재이므로 인상기준 상향 조정 필요	고용부	[불수용] ① 보고의무 면제는 산재 은폐방지, 근로자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곤란(현재 보고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 ②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약 90%의 사업장이 보험료를 인하받고 있으며, 보험료 수지상향 고려시 인상기준 확대 곤란	
산안-8	대용량 가스사용시설의 공정안전보고서 (PSM) 제외	① 1초당 최대 출력으로 일일 사용량을 계산할 경우 PSM 대상이지만 실제 특정시간의 저장량은 소량에 불과한 경우 PSM 제외	고용부	[불수용] ① 소량이라 하더라도 누출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시간의 보유량이 적다는 이유로 검사 면제 곤란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비고
환경-5	온실가스 목표관리 지표 중복 해소	①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에너지 자립 등 5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사용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온실가스만 목표로 설정할 필요	환경부 산업부	[불수용] ① 미국, EU 등 선진국도 온실가스 배출량 외에 에너지사용량, 이용효율 등을 별도 관리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각 목표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통합 및 폐지 곤란	
경영-6	재무제표 공시 관련 보고서 작성기준 일원화	① 사업보고서는 3년치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반면 감사보고서는 2년치를 공시함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기준의 차이로 업무 부담 가중, 2년으로 일원화 필요	금융위	[불수용] ① 사업보고서 공시는 투자자 보호제도로 2년치 정보로는 재무추세파악이 곤란하여 현 규정 유지 필요 *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도 3년치 재무정보 공시하도록 규율	
금융-5	투자자예탁금 예치 제도 폐지 및 예금보험료 징수 면제	금융기관은 파산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예탁금 100%이상을 증권금융에 예치하는데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까지 납부 ① 투자자예탁금 예치제도 폐지 ② 예금보험료를 증권금융이 부담하거나, 보험요율을 은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	금융위	[불수용] ① 예탁금 별도예치는 사전적 보호제도이며, 예금보험은 사후적 보호제도로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인만큼 폐지 곤란 *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도 양 제도 함께 운영 중 ② 현재 금투업권은 예금보험료를 30% 할인받고 있으며, 고유계정부분(55%) 보험료가 면제되고 공통계정(45%)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인하 여지 미미	
금융-7	계열사 펀드판매 규제 완화	① 계열사 펀드 판매금액을 총 펀드판매금액의 50%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차선 상품 권유 및 고객선택권 제한 발생	금융위	[불수용] ① 동 제도는 2년 기한의 일몰규제로 '13년 도입 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한 차례 연장, 향후 계열사 펀드판매 잔액이 10%p 이하로 축소될 경우 폐지여부 검토 예정 * 직접규제인 동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간접 규제(비계열펀드 권유 의무, 차별 성과보상 금지 등)를 폐지하여 중복소지 차단	

순번	과제명	과제개요(건의내용)	소관부처	검토결과	비고
물류-1	화물물류터미널 개발제한구역내 제조·판매 허용	① 그린벨트 내 복합물류터미널 부지에 제조시설 등 신축 허용 ② 그린벨트 내 기존 유희건축물을 제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허용	국토부	[불수용] ①② 그린벨트 내 제조시설 및 점포의 설치는 인구집중 유발, 기반시설 확대 등 개발행위 촉진 우려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설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물류-5	대규모점포의 출점 관련 유통법·상생법의 중복규제 해소	① 대규모 점포 출점시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의가 필요한 점포 개설등록(유통법)과 사업조정 신청(상생법)을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중복 규제	산업부 중기청	[불수용] ① 점포개설등록시 협의절차는 상권영향·지역 협력을 위한 사전협의인 반면, 사업조정은 실제 피해 우려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절차로 양 제도는 신청대상 및 내용·효과 등이 상이하여 선택적 운영 및 통합 곤란	
물류-6	TV홈쇼핑업체 대상 표시광고법 중복규제 해소	① TV홈쇼핑업체는 표시광고법, 방송법, 판매물품 관련 개별법에 따른 3종의 허위광고 금지의무 적용 관련 조사권한을 방통위로 이관하여 일원화 필요	공정위 방통위	[불수용] ① '07년 방송위·공정위·식약청 간 업무협약*으로 허위광고 관련 중복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타기관 조사중 및 종결사안에 대한 조시 일시중지, 관계기관 협의, 타기관 조사결과가 충분한 경우 별도 추가제재 미 실시 등 또한, 조사권한 이관은 동일한 물품을 홈쇼핑이 아닌 방식(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과의 형평성에 따라 수용 곤란	

1 검사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제외 확대

- (개선방향) 안전성 우려가 낮은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71% 제외
 - * 평가비율 : (체외진단검사) 42%, (유전자검사) 12%, (시술) 25%, 기타 21%
 - * 체외진단검사 : 혈액, 소변 등을 채취하여 질병·감염 여부 진단
 유전자검사 : 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검사하여 유전질환, 종양, 염색체 이상 등 진단(다운증후군, 약물 이상반응 등)
- (추진 상황) 5월 중 심의기준(예규) 개정 추진
 - * 관계기관, 전문가, 산업계가 참여한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
- (주요내용) 검사방법의 원리 또는 진단을 위한 필수 물질군 변경 시에만 신의료기술평가하도록 개정
 - (검사방법 분류) 검사방법의 원리가 같은 것은 동일한 검사로 판단하도록 개선(검사원리 40→16개 분류)
 - (검사 대상) 기존에는 “개별 물질” 하나만 달라져도 평가하였으나, 향후 “필수 물질군(群)” 포함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체외진단, 유전자검사는 평가 제외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의료기기 허가 후 바로 시장진입 3배 확대

< 검사분야 평가 제외대상 효과 >



2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단축

- (개선방향) 체외진단, 유전자검사는 평가기간을 280일→140일로 단축
* 전문가간 이견이 있어 심층 검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
- (추진 상황) 5월 중 기간 단축 실시를 위해 법령 개정 추진 중
- (기대효과)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져 시장진입 시기가 5개월 앞당겨지는 효과

3 식약처 허가과 신의료기술평가의 통합 운영

- (개선방향) 의료기기와 의료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를 통합 운영(2월 시범사업, 7월 본사업)
 - 허가시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상호 중복이 없도록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양자의 검토결과를 허가에 반영

< 제도개선 전후 비교 >



- (추진 상황) 2.22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
 - 7월 본사업 실시를 위해 시범사업 사례 분석, 법령개정 추진 중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와 허가의 연관성이 높은 경우 통합운영을 통해 일치된 결과를 업체에 회신
 - (대 상) 의료기기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임상시험 자료 심사 대상인 의료기기로 복지부·식약처의 검토사항이 밀접한 경우
 - * 업체의 신청에 따라 적용하여, 해외 수출만 원하는 경우에는 허가만 신청 가능
 - (허가·평가절차) 업체가 식약처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과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검토 결과 일치
 - 복지부는 식약처에 의료기술 검토자료를 제공하고, 식약처는 평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료기기 검토의견을 설명하는 등 상호 협조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심의 기구(20인)
 - (허가·평가결과)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적합여부를 모두 반영하여, 80~140일 이내에 식약처가 회신

<참 고> 그간 부처간 협업 내용

- ▶ 통합운영 대상, 절차 확정을 위한 복지부·식약처 공동 TF 운영 ('15.11월~'16.2월, 격주 단위)
- ▶ 시범사업을 위한 복지부·식약처 공동 지침 마련(2월)
- ▶ 업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1~2월)

- (추가 제도개선) 통합 운영의 취지 달성에 도움이 되고, 허가과 신의료기술평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가 제도개선 추진
 - (근거창출 지원) 복지부·식약처의 통합 운영을 통한 의견조율에도 임상 근거자료 부족으로 탈락하는 경우 사유별 근거창출 지원 실시
 - 안전성이 확보되었으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술을 허용하여 임상 근거 축적을 지원(7월)
 - 연구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근거 창출을 위해 R&D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우선 연계('17년 R&D 과제 선정시부터 적용)

- (임상시험 활용 제고) 업체가 하나의 임상시험 자료를 식약처 허가, 신의료기술평가에 모두 활용하여 비용 절감(건당 4~10억원) 유도
 - 임상시험 계획 승인시 신의료기술평가 관점의 자문 실시(7월)
 - 식약처의 임상시험 자료를 신의료기술평가에도 활용(7월)

- (기대효과) 의료행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을 통해 시장 진입까지 기간 3~9개월 단축
 - 업체는 식약처에 한 번만 신청하고, 통합 운영 검토결과 통보 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하여 편의 증대
 - 통합 운영 탈락시 근거창출 지원, 임상시험 설계시 자문 실시 등으로 업체의 비용 절감 및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 제고

① 실외후사경 장착관련 규제개선

- 경북 경산에 소재한 에스엘(주)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전조등, 야시, 미러 부품 등을 주로 생산하며, AVM(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HUD(전방표시장치)의 개발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약 1조 3,59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 에스엘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앞으로 대중화될 친환경 자동차나 자율주행차량에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 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것을 예상하여 제품개발에 착수하여 개발 완료 단계에 있다.
-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와 같이 신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새로운 제품이 실외후사경을 대체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실제 생산하여 상품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국토부는 실외후사경을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 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1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각지대 축소에 의한 운전자 편의성 증대 및 연비 개선에 의한 환경오염 개선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② 폐기인체 지방의 바이오 소재 가공용 재활용 분류

- 메디칸(주)은 지방흡입시술시 발생하는 폐인체지방을 화장, 창상용 인공 피부, 휴먼 콜라겐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을 산업부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진행 중이다.
- 인체지방 1kg에서는 세포외기질 3,000mg(15만 달러어치)과 콜라겐 120mg(2만4천 달러어치)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7만4천 달러(한화 약 2억원)어치에 이른다.
- 폐인체지방의 바이오소재 산업화를 위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단순 의료폐기물(조직폐기물)로 분류되어 연간 100여톤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약 20조원에 달한다.
- 이에 국무조정실에서는 환경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폐인체지방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③ 동일건축물의 고압가스 냉동설비 능력 합산 허용

-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냉매를 이용한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개개의 냉동설비마다 같은 내용의 기술검토서와 허가신청서를 수차례 반복 작성해서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칠곡경북대학병원의 경우 기계실에 나란히 있는 12개의 동일한 냉동시설들에 대해 무려 12회나 동일한 내용의 반복신고와 12개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했다.
- 이로 인한 비용부담도 적지 않지만 똑같은 허가신청을 반복해야 되는 행정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비효율적인 행정낭비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냉동설비의 냉동능력 합산적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현장조사, 관계기관, 냉동설비 제조·설치업자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냉동능력 합산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동일한 내용의 허가신청을 반복해야했던 부담이 대폭 줄어 많은 기업들의 비용과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육아휴직으로 인한 건설업등록기준 일시적 미충족 허용

- 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일정수 이상의 기술자격자를 상시 보유하고 실제 기업현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미달될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된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기술자격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를 상시보유로 보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을 내려면 퇴사를 해야 하는 등 해당 근로자 및 소속기업에까지 부담으로 작용되어 왔다.
- 이러한 상황은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건설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크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기술인력이 3인 이상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1인에 대해 육아휴직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로 했다.